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2.

법제사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5월 8일, 배준영의원 등 13인

나. 회부일자: 2025년 5월 9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7회 국회(임시회)

「국회법」 제58조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회부(2025.7.24.)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7.25.) 상정/심사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8.25.) 상정/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11.20.) 상정/심사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2026.1.21.) 상정/심사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6.2.3.) 상정/심사

제1차 전체회의(2026.2.4.)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
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배준영의원)

컨테이너 물동량 세계 4위, 보유 선박수 세계 5위 등 해양 강국으로 자리매김한 우리나라는 국제적인 위상에도 불구하고 해양분쟁을 해결하거나 중재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기구 등의 인프라가 미비하여 대부분의 해상분쟁을 외국의 중재 제도나 재판에 의존함.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전문법원인 ‘해사법원’을 설치하여 해양분쟁 발생 시 국내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국부의 해외유출을 막고, 해사소송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해운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법원조직법」에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전문법원인 해사법원과 그 지원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1심은 대한민국 고속도로와 철도가 시작한 곳이며 세계 허브공항인 인천국제공항이 있고 최대 교역국인 중국 물동량의 약 60%를 담당하고 있는 인천항을 보유한 인천광역시에 설치되는 해사법원 본원이 전국을, 해사법원 부산지원이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를, 해사법원 광주지원이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도록 하고, 2심은 해사법원 본원에서 전속적으로 관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 제4조제9호, 별표 1 및 별표 11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성완)

해사법원의 설치를 전제로 해사법원의 소재지와 관할구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해사법원의 설치 필요성 및 그 구체적인 설치 형태에 관한 논의와 연계하여 검토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 김용민)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